

인천관광공사 MICE 지원제도 • 기타회의의 경우, 기한 홈페이지 참고

구분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기업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신청주체	○ 국내 외 컨벤션을 인적으로 유치 및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 기업에서 주최하여 인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기관 (단일행사 포함, 기업, 협회, 단체 등)			○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관광을 인천에서 유치 및 개최하는 주최기관 (기업, 협회, 단체 등)		
기준	○ 국제기구(혹은 가맹) 기관 또는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 250명 이상의 참가자(+ 3개국 이상의 외국인 100명 이상)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 참가자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의 회의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학·협회 주최, 정기 개최되는 국제회의 - 50명 이상의 참가자 - 3개국 이상 순회 ○ 국제기구 주최(또는 후원)하는 국제회의 - 50명 이상의 참가자 ○ 이외 기타 : 내부결산도 결과 개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 ※ 온라인 유치·홍보 개최는 지원 불가하며, 개최지원의 경우, 오프라인과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지원 가능	○ 내·외국인 5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인천 유류 시설 이용 ○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지원의 경우 내·외국인 5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온라인 참여자 200명 이상인 경우를 통시 총괄하는 경우			○ 내·외국인 5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1박 이상 인천 숙박 ※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허용하지 않음		
단계별	유치지원	홍보지원	개최(일반)지원	개최(간소화)지원	맞춤지원	방역지원	개최지원
지원규모 (한도)	최대 3천만원 (온라인 최대 5백만원)	최대 2천만원 (온라인 최대 5백만원)	최대 1억원	최대 5백만원	규모별 상이	최대 1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범위 내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준비비 : 유치제안서/PT 제작, 기념품/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 - 해외 현장 유치활동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Incheon Night), 부스 운영, 행사행사 등래비(최대 2인) - 유치단의 숙박 및 항공비(최대 2인 스탠다드룸, 이코노미석까지 가능) - 담당자별 관계자(임원 및 인사 결정권자에 한함) 사전방한(인천 답사) : 숙박 및 항공비(최대 2인 스탠다드 룸, 비즈니스석까지 가능) <p>※ 유치준비비 또는 활동비는 유치가 결정되거나 유치PT가 이뤄지는 해외회의 참가 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준비비 : 기념품/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 홈페이지 제작 등 - 해외 현장 홍보활동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Incheon Night), 부스운영, 홍보단원 숙박 및 항공비 (최대 2인 스탠다드룸, 이코노미석 까지 가능) <p>※ 해외에서 개최되는 직전 3개월 또는 유사회의 참가 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일차료(컨벤션센터, 호텔 등) - 공식 연회 식음료 및 공연(환영리셉션 등) -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 홈페이지 및 참가자 전용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 중계소 조성, 화상·음향장비 등 기자재 - 기념품/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페이지 운영(인천 안내, 홍보영상 상영, 문화체험 등) - 데마관광프로그램(버스 임대료, 가이드비 등) - 웹핀서플리넨스 - 인천 홍보물 기념품 - 인천 홍보영상 - 인천 Young MICE 리더 인력 - 인천시타워터버스 티켓 할인 - 컨설팅, 지지서한 등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행사별 최대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면적 560㎡ 미만 : 금400만원 범위 · 사용면적 560㎡ 이상 : 금1,000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물품(소모품) 비용지원 · 행사장 속도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행사장 일차료(컨벤션센터, 호텔 등) - 중계소 조성, 화상·음향장비 등 기자재 - 대항버스 주차공간, 의료지원 등 안전운영 관련 비용 - 숙박시설 숙박료 - 행사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환영리셉션 등) -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 홈페이지 및 참가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비 - 기념품/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비 등 ○ 맞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환영사, 초청 서한문 등 VIP이전 - 공동 언론 홍보 및 인천 홍보물, 홍보영상 - 지역업체 연결 등 지역사회공헌(호텔, 재래시장, 의료관광, IMA 회원사, 행사장 주변 주요시설 등) - 인천 MICE 인력풀(Young MICE 리더 등) 운영인력 지원 - 인천시타워터버스 티켓 할인 등 ○ 방역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행사별 최대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면적 560㎡ 미만 : 금400만원 범위 · 사용면적 560㎡ 이상 : 금1,000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물품(소모품) 비용지원 · 행사장 속도 비용지원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관련 인천 홍보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개최지원(일반) 택2, 개최지원(간소화) 유치·홍보지원 택1 ①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 노출 ② 2건 이상(홈페이지, 영상백화, 기념품, 프로그램, 현수막, 홍보물 등) ③ 연회 및 공식 행사 시 인천홍보 영상 상영 ④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자 대상 인천 관광 정보 안내 * 홈페이지가 없을 시, 온라인 홍보채널 등 활용(개최지원에 한함) <p>○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이 선(%) 집행, 결과보고 검토 후 인천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소화 지원은 제외하며, 선(%)집행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공사와 신청단체 협의 <p>-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대장에 따라 2022.12.09까지 결과보고 가능 행사에 한하여 지원 * 기한 내 제출 불가능한 경우, 마감일 이전 사전 협의의 후 지체 사유 등을 영기한 공문 제출을 통하여 기한 연장 가능 <p>- 지원금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 불가한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 지급 <p>- 참가규모 등 신청 대비 결과가 기준 미부합 시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p> <p>- 정보 허위 및 중박 기재 또는 지출증빙 서류 위조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p> <p>- 유치 및 홍보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 변경 시, 지원금 환수(발생이자 등 포함)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변경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p>※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각종 설문조사 실시 협조 - 주최기관 및 대행사 대상 현장 모니터링 및 미팅 협조 -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 준수 철저(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관련 인천 홍보 (택1)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①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 노출 ② 연회 및 공식 행사 시 인천홍보 영상 상영 ③ 공식 홈페이지 및 홍보채널 등을 통한 참가자 대상 인천 관광 정보 안내 <p>○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이 선(%) 집행, 결과보고 검토 후 인천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 회계대장에 따라 2022.12.09까지 결과보고 가능 행사에 한하여 지원 * 기한 내 제출 불가능한 경우, 마감일 이전 사전 협의의 후 지체 사유 등을 영기한 공문 제출을 통하여 기한 연장 가능 - 지원금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필수 * 발행 불가한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 지급 - 참가규모 등 신청 대비 결과가 기준 미부합 시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p>○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의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 지원이 가능하나 (단, 인천에 중계소 설치 시), 포상관광은 대상은 허용하지 않음 - 부가기재세비 및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 (개인 불가) * 기타(간소화)의 경우 행사를 개최하는 배부, 공공기관 등도 신청 가능(의임장 필수) - 기업회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 지원은 합산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온라인 참가인원 중 방문객은 담당자와 신청단계 협의 후 결정 * 결과보고 시, 국적, 성명, 소속 정보가 누락된 참가자 불인정 (단순 일반인 참가자 불인정) - 신청인원 대비 결과가 기준 미부합 시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 인천지역 업체 60% 이상 활용 필수(가능한 사용자 없을 시 공사와 사전 협의) <p>○ 지원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단 유관부서 재정지원 중복 불가 -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지원 불가 * 단, 한국관광공사 MICE 지원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항목 지양 - 관련법령 및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 호위, 시차, 퇴장준비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 종교 행사 등 일부 행사 * 행사 명칭과 관계없이 정치적·종교적 행사가 이뤄질 경우 지원 취소 가능 					
신청시기	○ 정기 또는 수시 접수 - 정기 : 연 2회 / 상·하반기 - 수시 : 유치·홍보·개최 활동 시점의 최소 1개월 전	○ 개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내부심사 > 지원승인 > 여행사역서 제출 > 결과보고 제출 > 결과보고 검토 >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 > 내부심사 > 지원승인 > 지원서행 > 결과보고 제출 > 결과보고 검토					○ 신청 > 사전협의 > 승인 > 승인결과 통보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hazel@ito.or.kr)을 통한 신청	○ 인천컨벤션뷰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 인천관광공사 MICE부서 정혜선 대리 [전화 : 032-899-7434 / 이메일 : hazel@ito.or.kr]	○ 인천관광공사 MICE부서 최승희 대리 [전화 : 032-899-7431 / 이메일 : seunghee@ito.or.kr]					